

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수시공시
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22 조(수시공시) 및 신탁약관 제 51 조(수익자에 대한 공고등)에 따라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.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Tops Value 주식투자신탁 1 호

2. 시행일 : 2007. 11. 09.

3.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주요 내용

◇ 변경 내용

(1) C2 클래스 판매기준 변경

◇ 변경 대비표

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	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
<p>제 20 조(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)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.</p> <p>1. A 클래스 수익증권 : 선취판매수수료 있음 2. C 클래스 수익증권 :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3. C2 클래스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일임형 중 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간접투자기구</p> <p>4. C-e 클래스 수익증권 : 온라인 가입자 ②~③ (생략)</p>	<p>제 20 조(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)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.</p> <p>1. A 클래스 수익증권 : 선취판매수수료 있음 2. C 클래스 수익증권 :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3. C2 클래스 수익증권 : 법인세법 시행령 제 17조의 2 제 8 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,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간접투자기구</p> <p>4. C-e 클래스 수익증권 : 온라인 가입자 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부칙 신설></p>	<p>부 칙 (시행일) 이 신탁약관은 2007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.</p>

(2) 판매사 추가 : CJ 투자증권